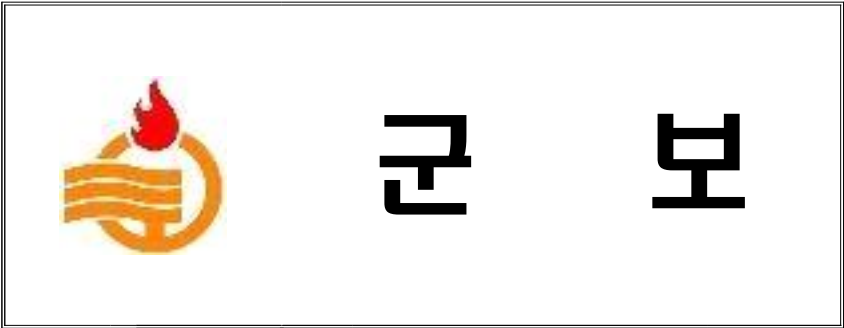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강화군

군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38호
2026년 9월 3일(목)

선	기관의 장
람	

- 차 례 -

입 법 예 고

제2026-1318호	「강화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입법예고	
제2026-1322호	「강화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7
	입법예고	
제2026-1323호	강화군 개발행위 허가지침 개정안	- 22
	입법예고	

입법 예고

강화군 공고 제2026-1318호

「강화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강화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3일

강 화 군 수

1. 개정 조례명: 강화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강화군 신규 지역특화사업(통합돌봄 대상자 간병비 지원 사업, 퇴원환자 등 임시 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 등

3. 개정내용

- 제6조 제9호, 제10호 신설
 -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후 집중회복이 필요하거나 일상생활 중 일시적 돌봄 공백이 발생한 통합지원 대상자를 위한 임시 거주시설의 설치·운영
 - 의료기관에 입원한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
- 제12조 제1항, 제2항 개정
 - 통합지원협의체 통합운영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9월 23일까지 강화군수(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조례 개정안	찬·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방법 등

- 제출 방법: 팩스 또는 전자우편
- 보내실 곳
 - 1) 팩스: 032-930-3647
 - 2) 전자우편(이메일): gyubol139@korea.kr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복지정책과(☎ 032-930-39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공청회 개최계획 : “개최계획 없음”

강화군 조례 제 호

강화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9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후 집중 회복이 필요하거나 일상생활 중 일시적 돌봄 공백이 발생한 통합지원 대상자를 위한 임시 거주시설의 설치·운영

10. 의료기관에 입원한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

제11조제1항 중 “통합지원”을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구성된 강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 군수는 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실무협의체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통합지원 시책 추진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생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구성된 강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 군수는 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실무협의체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자치법규안 내용	의견	비고

강화군 공고 제2026 - 1322호

「강화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화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3일

강 화 군 수

1. 제정 이유

- 강화군 각종 위원회가 개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운영 및 관리에 관한 통일된 기준 마련 필요
- 유사·중복 위원회 설치 방지 위원의 중복 위촉 제한 및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정비 등 위원회 관리체계 구축 필요
-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와 회의 공개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2. 주요내용

○ 위원회 설치·관리체계 (안 제5조~제6조)

- 위원회 설치 전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 등

○ 위원 구성 및 임기 기준(안 제7조~제8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 특정인의 다수 위원회 중복 위촉 제한
-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 위원회 공정한 직무수행 마련(안 제9조~제10조)

- 위원회 제척·기피·회피를 규정하여 위원회 이해충돌 방지 및 해촉 규정 명시

○ 위원회 운영 및 투명성 강화(안 제11조~제13조)

- 위원회 개최, 의사·의결 정족 수 및 회의의 공개, 의견청취 등

○ 위원회 관리 및 정비체계 마련(안 제14조)

- 위원회 정비 계획 수립 및 군의회 보고 등

3. 제정 조례안 : 별도 첨부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9월 23일까지 강화군수(감사법무담당관)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조례 개정안	찬·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방법 등

- 제출 방법: 팩스 또는 전자우편
- 보내실 곳

1) 팩스: 032-930-3644

2) 전자우편(이메일): sej5220@korea.kr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감사법무담당관 법무팀(☎032-930-34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공청회 개최계획 : “개최계획 없음”

강화군 조례 제 호

강화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군 소속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이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설치 절차)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무는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 기한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4. 회의의 소집 및 의사·의결정족수
5.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위원회 설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제6조(위원회의 비상설 운영) 군수는 계속하여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안전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해당 안전의 처리가 끝나면 해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 예정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공개 동의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인이 다수의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고, 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참여기회의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강화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가 추천한 강화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해당 안건의 처리가 끝나면 해산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의 성격상 전문성 및 업무의 연속성이 특히 요구되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며,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 1명을 둘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선임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8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질병, 사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위원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하여 위원으로서의 청렴 의무를 저버린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 해당 위원에게 그 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긴급한 사유로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는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한 경우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소집,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서면심의를 정족수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회의의 공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위원회가 비공개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회의록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공무원 등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위원회 운영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된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매년 위원회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정비계획(통폐합, 폐지, 운영 개선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공개 동의서

- 소속:
- 직위:
- 성명:
- 성별:

1.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강화군은 위원 위촉 및 위원회 구성·운영·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위원 위촉, 위원회 구성·운영 및 위원 현황 관리
- 수집·이용 항목: 성명, 소속, 직위, 성별 등 위원 위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보유·이용 기간: 위원 위촉기간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관련 기록물 보존기간
- 동의 거부 권리: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원 위촉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가 필요한 정보는 해당 법령에 따라 공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 공개 안내

강화군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 공개 대상: 일반 국민
- 공개 목적: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 공개 항목: 성명, 소속, 직위
- 공개 방법: 강화군 홈페이지 등
- 공개 기간: 위원 위촉기간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별지 제2호서식]

청 령 서 약 서

본인은 강화군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관계 법령과 원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나.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비공개 정보나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다.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라.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스스로 회피하는 등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마.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원 해촉 등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강화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건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 대		

규제영향분석서

I.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2. 소관부서명 작성자 인적사항	부서명 : 감사법무담당관 과 장 : 지방행정사무관 윤승구 팀 장 : 지방세무주사 선은주 담당자 : 지방행정서기보시보 임희정								
3. 근거법령	해당없음								
4. 자치법규명	「강화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자: 각종 위원회의 위원(민간인) ○ 그 외 이해관계자: 강화군								
6. 규제 존속기한	○ 규제 존속기한 - 미설정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신설 규제(제정조례안 제9조제1항~제3항)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추진배경

- 강화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위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이 필요함.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위원이 본인 또는 가족·소속기관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참여할 경우 공정한 심의가 곤란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위원이 스스로 회피하거나, 당사자 또는 다른 위원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규제 신설이 필요함.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

2-1. 규제대안의 검토

-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대체수단보다 이해충돌 방지 효과가 명확하고, 위원회 운영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판단됨.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규제 비용 분석
 - “해당없음”
- 규제 편익 분석
 -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 군민 신뢰도 향상
 -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로 위원회 결정의 객관성·합리성 강화

2-3.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 “해당없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3-1. 규제의 적정성

-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규제의 내용이 적정함.

3-2. 이해관계자 협의

- 입법예고 시 의견수렴 예정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 회의 개최 전 안건 검토 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제척·회피 사유 발생 시 즉시 보고·기록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규제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강화군 공고 제2026-1323호

강화군 개발행위 허가지침 개정안 입법예고

「강화군 개발행위 허가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3일

강 화 군 수

1. 예 규 명 : 강화군 개발행위 허가지침

2. 개정이유

-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규정을 제한함에 따라 관련 지침 개정
- 나. 재해예방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 있으나 소규모 개발행위(단독주택 등)의 경우 예치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군민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

3. 주요내용

- 가. 태양광 발전시설 법정도로 및 해안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삭제 (제10조제1항제1호)
- 나. 발전시설 부지 경계 200미터 이내 5호 이상의 주택 위치 시 입지제한 (제10조제1항제7호)

- 다. 건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민 동의 조항 삭제 및 시공 기준 신설 (제10조제2항제3호)
- 라.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이격거리 예외 조항 신설 (제10조제2항제7호)
- 마. 총공사비(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비용) 1,500만원 미만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 예치 면제 조항 신설 (제11조)

4.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9월 28일까지 강화군수(건축허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개 정(안)	찬·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시 근거자료 첨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주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강화군청 건축허가과)

2)팩스 : 032-930-3641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건축허가과(032-930-385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공청회 개최계획 : “개최계획 없음”

강화군 예규 제 호

강화군 개발행위 허가지침 일부개정예규안

강화군 개발행위 허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발전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5호 이상의 주택이 입지하지 아니할 것

제10조제1항제8호 중 “관련없”을 “관련 없”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보행자 낙하 사고 예방을 위하여 태양광 모듈의 끝선이 건축물의 마감선(「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부분)을 벗어나지 않도록 설치할 것
- 나. 5kW 초과 설비는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이하 “관계전문기술자”라 한다)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 시공할 것
- 다. 설비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콘크리트 또는 철제 구조물에 직접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전문기술자에게 전체 설비의 안전성을 확인받아 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주변 경관 및 농지 이용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이행보증금 예치의 면제) ① 허가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 중 총공사비(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을 포함한다)가 1천500만원 미만인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이행보증금의 예치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 예치 대상이거나 재해 발생 또는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별지 서식의 원상복구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에 접수된 개발행위허가(건축의제 포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서식]

원상복구 이행확약서

1. 민원인

- 성명(법인명):
- 주소/사업장:
- 연락처:

2. 인허가 사항

- 개발행위허가 번호:
- 허가일자:
- 공사명/위치:

3. 동의 내용

본인은 상기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이행보증금이 면제된 조건으로, 토지 훼손, 토사 유실, 환경오염 등 허가조건에 따른 원상복구 및 행정대집행 사유 발생 시 해당 복구를 성실히 이행할 것에 동의합니다.

4. 위반 시 조치

이행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지자체는 관련 법령 및 허가조건에 따라 대집행 조치 및 비용 청구를 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5. 기타

작성일: 20 년 월 일

민원인 성명/대표자: _____ (서명/도장)

강화군수 귀중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법정도로(국도, 지방도, 광역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및 해안선에서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 6. (생략) 7. 주거밀집지역(5호 이상의 실세 주민이 거주하는 민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함) 내 부지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8. 토지형질변경 여부 및 시설 규모와 <u>관련없이</u> 계획의 적정성, 입지여건,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의 공익상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	제10조(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 -----. <삭제> 2. ~ 6. (현행과 같음) 7. 발전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5호 이상의 주택이 입지하지 아니할 것 8. ----- ----- <u>관련 없음</u> ----- ----- ----- ----- -----. ② ----- ----- ----- -----

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안의 세대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4. ~ 6. (생 략)

<신 설>

-----.

1. · 2. (현행과 같음)

3.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보행자 낙하 사고 예방을 위하여 태양광 모듈의 끝선이 건축물의 마감선(「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부분)을 벗어나지 않도록 설치할 것

나. 5kW 초과 설비는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이하 “관계전문기술자”라 한다)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 시공할 것

다. 설비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콘크리트 또는 철제 구조물에 직접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전문기술자에게 전체 설비의 안전성을 확인받아 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 6. (현행과 같음)

7.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신 설>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주변 경관 및 농지 이용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이행보증금 예치의 면제)

① 허가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 중 총공사비(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을 포함한다)가 1천500만원 미만인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이행보증금의 예치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 예치 대상이거나 재해 발생 또는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별지 서식의 원상복구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견	비고